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9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1년 2월 25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, 안 제5조의2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삭제하고,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)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,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<u>제5조의2(공공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 확보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공시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고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의 육내화 또는 지하화 등 적절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시장 생활폐기물을 자치구에서 설치한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부족 등으로 관할구역내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의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각 자치구간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와 공시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</u></p>	<p><u>제5조의2(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 확보 등 지원) 시장은 공시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, 자치구의 공시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) 시장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,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(신 설)</u>	<u>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)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,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